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1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한 미 회 계 법 인

목 차

	페이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첨부)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5
· 운 영 성 과 표	7
· 주석.....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3

한 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신 기 동

2019년 2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제 1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 차준택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전 화) 032-500-2024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3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323,194,285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1,035,019,198	
2. 단기금융상품(주석5)	10,000,000	
3. 미수금	277,501,687	
4. 선납법인세	673,400	
II. 비유동자산		1,571,496,643
(1) 유형자산(주석6)		1,548,285,290
1. 비품	1,878,440,371	
감가상각누계액	(1,131,365,590)	
2. 도서	1,876,036,208	
감가상각누계액	(1,074,825,699)	
(2) 무형자산(주석7)		23,211,353
1. 소프트웨어	23,211,353	
자 산 총 계		2,894,690,928
부 채		
I. 유동부채		388,806,523
1. 미지급금	257,410,122	
2. 예수금	131,396,401	
II. 비유동부채		5,174,529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8)	1,381,532,365	
퇴직연금운용자산	(1,376,357,836)	
부 채 총 계		393,981,052
순 자 산		

과목	제 13 (당 기)	
I. 기본순자산(주식1,9)		10,000,000
II. 보통순자산		2,490,709,876
1. 잉여금	2,490,709,876	
2. 적립금(주식10)	-	
III. 순자산조정		-
순 자 산 총 계		2,500,709,876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2,894,690,92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13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3 (당) 기	
I. 사업수익		13,114,923,455
1. 보조금수익	12,601,049,958	
2. 자체사업수익	448,656,139	
3. 기부금수익	20,687,000	
4. 기타사업수익	44,530,358	
II. 사업비용(주석12)		12,941,317,871
1. 사업수행비용	8,450,504,546	
2. 일반관리비용	4,425,907,872	
3. 모금비용	20,375,095	
4. 기타사업비용	44,530,358	
III. 사업이익		173,605,584
IV. 사업외수익		41,831,218
1. 이자수익	16,192,991	
2. 잡이익	25,638,227	
V. 사업외비용		1,361,827
1. 이자수익반환금	1,361,827	
V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214,074,975
VII. 법인세비용(주석13)		-
VIII. 당기운영이익		214,074,97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3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1. 재단의 개황 및 주요사업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문화진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년 11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재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재단의 기본재산은 10백만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단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2017. 12. 7.)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재단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말 현재 재단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기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통합 재무제표와 공익목적사업부문 재무제표는 동일합니다.

(2) 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재단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재단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재단이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비 품	5년	정액법
도 서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 되어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재단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8) 자산손상

금융자산, 재고자산, 및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퇴직급여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임직원에게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종업원과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고 퇴사한 종업원과 관련한 부채를 각각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기 부채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상기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실제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사용 잔액을 일시에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순자산

재단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은 순자산조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은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비용

재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현재 재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구분	예입처	당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신한은행	1,035,019

5.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재단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순자산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구분	예입처	당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00

6.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기초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741,861	318,424	313,211	747,074
도서	739,114	357,632	295,535	801,211
계	1,480,975	676,056	608,746	1,548,285

7. 무형자산

당기 중 재단의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기초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43,195	19,984	23,211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초금액	1,179,439
당기지급	(174,369)
당기설정	376,462
기말금액	1,381,532
차감: 퇴직연금운용자산	(1,376,358)
장부가액	5,174

9. 기본순자산

당기말 현재 재단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자산의 총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본순자산(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본순자산(기본재산)	10,000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중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적립·환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기초 미사용 잔액	-
신고조정에 의한 적립액	4,688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액	4,688
기말 미사용 잔액	-

11. 순자산의 변동

재단의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10,000	-	2,276,635	-
당기운영이익(손실)	-	-	214,07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4,688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	4,688	-	-
당기말	10,000	-	2,500,710	-

1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4,497,780	2,389,707	6,009,300	12,896,787
사업수행비용	3,451,160	348,609	4,650,736	8,450,505
일반관리비용	1,027,044	2,041,098	1,357,766	4,425,908
모금비용	19,577	-	799	20,376
기타사업비용	-	-	44,530	44,530
합계	4,497,780	2,389,707	6,053,830	12,941,317

13. 법인세비용

재단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당기 및 전기 법정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은 약 11%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기 및 전기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14. 중요한 거래

당기 중 재단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거래처	금액	과목	적요
(주)꿈이있는일터	662,361	지급수수료	아트센터 시설물위탁관리 용역비
한국전력공사	398,931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소계	1,061,292		